

2021년도
시설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1. 5. 31. ~ 6. 4.(5일간) / 2018. 6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7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7건 (주의 8건, 시정 9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건 / 3,196,99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성공적 개최

-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2,200여명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전쟁의 참상과 자유·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7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시설 사업소	총 17건	주의 8 시정 9		3건 3,196,990원
1	복무, 서무 (4)	◦ 각종 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주의		
2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주의		
3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소홀	시정		
4		◦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소홀	주의		
5	예산, 회계, 계약 (10)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주의		
6		◦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소홀	시정		
7		◦ 공금계좌[수입금출납원] 관리 소홀	주의		
8		◦ 신용카드[유류구매]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시정		
9		◦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일 준수 소홀	시정		
10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야외운동기구] 구매 부적정	주의		
11		◦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금 지급 소홀	주의		
12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시정		
13		◦ 송호관광지 시설사용료 세입조치 소홀	주의		
14		◦ 카누·카약체험장 물품 구입관련 지체상금 과소 부과	시정		추징 21,990원
15	민간위탁 (1)	◦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협약)이행보증 소홀	시정		
16	시설공사 (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033,000원
17		◦ 시설공사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시정		회수 1,142,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사용일	성 명	직 급	구분	부적정사항	비고
18.06.21.	A	**7급	공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응시 건 공가처리	
18.06.21.	B	**8급	공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응시 건 공가처리	
19.10.18.	B	**8급	공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응시 건 공가처리	
18.10.19.	C	**6급	포상휴가	특가사유 입력 부적정(가사일)	
18.10.26.	D	**8급	포상휴가	특가사유 입력 부적정(가사정리)	
19.02.12.	E	****	공가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자녀졸업식]를 공가로 입력	
19.05.13.~05.23.	F	**7급	출산휴가	배우자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출산휴가로 입력	
20.06.12.	G	**7급	포상휴가	특가사유 입력 부적정(가사정리)	
20.06.15.	H	**7급	포상휴가	특가사유 입력 부적정(가사정리)	
20.06.26.	G	**7급	포상휴가	특가사유 입력 부적정(가사정리)	
20.11.04.~11.17.	H	**7급	출산휴가	배우자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출산휴가로 입력	
21.02.17.	H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21.03.16.	I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기재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휴가는 행정기관(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예시: 비상근무 특별휴가(행정과-7643), 자녀 졸업식 참석, 본인결혼 등)입력하고 결재권자는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 행정과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 사용 및 복무제도(특별휴가, 당직 근무)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 준수사항 (휴가사용 오입력도 복무관리 지적사항에 해당)
 - 당직 대체휴무시 반드시 근무일 입력 : (예시) 1.2(일) 일직근무
 - 연가를 제외한 특별휴가 : 증빙 반드시 첨부(첨부파일) / 사유입력 철저
⇒ 경조사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유 자세히 입력

-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승진시험·전 직시험에 응시한 때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응시 3건에 대해 공가처리 하였고, 18. 10. 19. 외 4건의 특별휴가의 경우 사유를 가사정리 등으로 오등록 하였으며, 19. 02. 12. 외 2건에 대해서는 휴가구분을 착오입력하였고, 21. 2. 17. 외 1건의 대체휴무에 대해 당직근무일을 미입력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1	2018. 6. 8.(금)	08:00:26	21:01:35	**8급	B	2018. 6. 7. 숙직
2	2018. 6. 15.(금)	08:03:15	18:08:49	**6급	J	2018. 6. 14. 숙직
3	2018. 6. 16.(토)	09:01:03	18:11:28	**6급	C	2018. 6. 16. 일직
4	2018. 6. 17.(일)	09:04:48	18:03:00	**8급	B	2018. 6. 17. 일직
5	2018. 6. 26.(화)	08:03:20	21:08:52	**8급	B	2018. 6. 25. 숙직
6	2018. 7. 2.(월)	08:01:14	21:20:41	**8급	B	2018. 7. 1. 일직
7	2018. 7. 4.(수)	08:02:36	22:09:10	**8급	K	2018. 7. 3. 숙직
8	2018. 7. 18.(수)	08:25:26	21:22:07	**6급	J	2018. 7. 17. 숙직
9	2018. 7. 19.(목)	08:00:32	22:54:06	**9급	D	2018. 7. 18. 숙직
10	2018. 8. 11.(토)	05:55:13	17:58:16	**6급	J	2018. 8. 11. 일직
11	2018. 8. 19.(일)	09:03:30	18:12:39	**8급	B	2018. 8. 19. 일직
12	2018. 9. 1.(토)	09:24:14	18:03:31	**8급	B	2018. 9. 1. 일직
13	2018. 9. 13.(목)	08:01:53	23:01:14	**8급	B	2018. 9. 12. 숙직
14	2018. 9. 22.(토)	08:49:07	17:59:14	**7급	L	2018. 9. 22. 일직
15	2018. 10. 6.(토)	08:50:36	17:57:23	**9급	D	2018. 10. 6. 일직
16	2018. 10. 28.(일)	09:00:53	18:03:30	**7급	A	2018. 10. 28. 일직
17	2018. 11. 2.(금)	08:18:44	21:04:14	**6급	M	2018. 11. 1. 숙직
18	2018. 11. 11.(일)	10:18:19	18:00:33	**6급	J	2018. 11. 11. 일직
19	2018. 11. 16.(금)	07:54:27	-	**6급	M	2018. 11. 16. 숙직
20	2018. 11. 17.(토)	-	17:57:25	**9급	D	2018. 11. 17. 일직
21	2018. 11. 25.(일)	오류(업체해제)	17:53:54	**6급	N	2018. 11. 25. 일직
22	2018. 12. 9.(일)	08:51:24	17:52:34	**9급	D	2018. 12. 9. 일직
23	2018. 12. 20.(목)	08:01:17	18:11:02	**7급	O	2018. 12. 19. 숙직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24	2019. 1.20.(일)	09:15:50	18:43:01	**6급	P	2019. 1.20. 일직
25	2019. 2. 2.(토)	09:07:15	18:54:55	**6급	P	2019. 2. 2. 일직
26	2019. 2. 3.(일)	09:02:50	18:07:11	**6급	N	2019. 2. 3. 일직
27	2019. 2.23.(토)	08:38:58	17:58:53	**7급	L	2019. 2.23. 일직
28	2019. 3.24.(일)	09:04:17	18:46:35	**8급	Q	2019. 2.24. 일직
29	2019. 3.28.(목)	08:00:19	23:14:30	**8급	Q	2019. 2.27. 숙직
30	2019. 4. 6.(토)	09:00:27	18:04:26	**6급	N	2019. 4. 6. 일직
31	2019. 5. 5.(일)	09:00:15	18:44:03	**6급	P	2019. 5. 5. 일직
32	2019. 6.30.(일)	09:01:30	19:04:09	**6급	P	2019. 6.30. 일직
33	2019. 7.14.(일)	09:01:01	18:44:53	**6급	P	2019. 7.14. 일직
34	2019. 8.18.(일)	09:03:22	20:34:49	**6급	P	2019. 8.18. 일직
35	2019.11.10.(일)	09:10:54	19:05:33	**6급	P	2019.11.10. 일직
36	2019.11.22.(금)	08:07:05	21:52:38	**7급	R	2019.11.22. 일직
37	2019.11.25.(월)	08:10:16	23:16:53	**7급	S	2019.11.24. 일직
38	2019.12.20.(금)	08:23:34	19:39:15	**7급	L	2019.12.19. 숙직
39	2019.12.21.(토)	08:43:26	17:59:56	**7급	L	2019.12.21. 일직
40	2019.12.22.(일)	09:02:57	18:52:50	**6급	P	2019.12.22. 일직
41	2019.12.24.(화)	08:06:09	20:19:33	**6급	N	2019.12.23. 숙직
42	2020. 1. 8.(수)	08:00:07	22:43:48	**8급	D	2020. 1. 7. 숙직
43	2020. 1.12.(일)	09:07:32	18:54:22	**6급	P	2020. 1.12. 일직
44	2020. 1.18.(토)	07:50:15	17:59:18	**7급	L	2020. 1.18. 일직
45	2020. 2. 9.(일)	09:04:50	20:37:35	**6급	P	2020. 2. 9. 일직
46	2020. 3.22.(일)	09:02:24	18:55:39	**6급	P	2020. 3.22. 일직
47	2020. 3.28.(토)	07:42:50	17:58:10	**8급	T	2020. 3.28. 일직
48	2020. 4.26.(일)	09:09:58	18:10:13	**9급	U	2020. 4.26. 일직
49	2020. 4.27.(월)	08:10:03	18:11:50	**9급	U	2020. 4.26. 일직
50	2020. 5. 1.(금)	08:04:35	18:12:56	**9급	U	2020. 4.30. 숙직
51	2020. 5. 3.(일)	08:44:52	17:51:26	**8급	T	2020. 5. 3. 일직
52	2020.5.24.(일)	08:43:16	17:51:29	**8급	T	2020. 5.24. 일직
53	2020. 5.30.(토)	07:20:58	17:57:27	**9급	U	2020. 5.30. 일직
54	2020. 6. 7.(일)	08:48:23	17:58:43	**6급	V	2020. 6. 7. 일직
55	2020. 7. 2.(일)	09:00:51	18:45:07	**9급	X	2020. 7. 2. 일직
56	2020. 7.19.(일)	08:42:18	17:59:38	**6급	V	2020. 7.19. 일직
57	2020. 7.20.(월)	08:00:34	22:19:15	**6급	V	2020. 7.19. 일직
58	2020. 8. 1.(토)	09:01:35	18:29:52	**6급	P	2020. 8. 1. 일직
59	2020. 8.23.(일)	09:02:08	18:32:18	**6급	P	2020.8.23. 일직
60	2020. 9. 5.(토)	09:05:25	18:27:34	**6급	P	2020. 9. 5. 일직
61	2020. 9.19.(토)	08:47:50	17:59:12	**6급	Y	2020. 9.19. 일직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62	2020. 9.20.(일)	08:23:35	17:56:15	**8급	T	2020. 9.20. 일직
63	2020.10. 2.(금)	08:53:26	17:47:45	**8급	T	2020.10. 2. 일직
64	2020.10.31.(토)	08:47:52	17:59:54	**8급	T	2020.10.31. 일직
65	2020.12.12.(토)	08:48:53	17:59:08	**7급	G	2020.12.12. 일직
66	2021. 1. 1.(금)	08:36:51	17:55:23	**8급	T	2021. 1. 1. 일직
67	2021. 1. 9.(토)	08:51:10	17:59:07	**9급	U	2021. 1. 9. 일직
68	2021. 1.10.(일)	08:44:04	17:59:12	**6급	V	2021. 1.10. 일직
69	2021. 2.13.(토)	08:46:38	17:59:03	**6급	V	2021. 2.13. 일직
70	2021. 3. 6.(토)	08:40:33	17:56:19	**8급	T	2021. 3. 6. 일직
71	2021. 3.11.(목)	08:01:27	21:04:16	**9급	W	2021. 3.10. 숙직
72	2021. 3.27.(토)	08:51:14	17:58:48	**6급	V	2021. 3.27. 일직
73	2021. 3.28.(일)	09:01:12	20:50:04	**6급	P	2021. 3.28. 일직
74	2021. 4.18.(일)	09:00:33	21:42:18	**9급	U	2021. 4.18. 일직

※ 시설사업소 제출자료(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전산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면장에게 하여야 함.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8급 B 외 20명은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 등을 하면서 출근 시 47회 지각(평일 당직근무자의 경우 익일 오전 08:00까지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해제

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27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작동 하였으며,

- 특히, **6급 J의 경우 2018.11.11.(일) 일직근무자로서 1시간 18분을 지각하여 10시 18분에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해제하였고, **6급 M의 경우 2018.11.16.(금) 숙직근무자로서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등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9급	U	**9급	W	2020.11.16.	부	체육시설팀
2	**7급 **7급	H Z	**7급	I	2021. 1.10.	부	과거사지원팀
3	**7급	Z	**7급	H	2021. 1.10.	부	과거사지원팀
4	**7급	L	**8급	AA	2021. 1.10.	부	체육시설팀
5	**7급	I	**7급	H	2021. 4.15.	부	과거사지원팀
6	**7급	H	**7급	I	2021. 4.15.	부	과거사지원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부서장 결재 후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시설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6건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과사무소팀	노근리평화공원 환경정비	2	2020.05.01.~10.31.	미실시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미실시	
체육시설팀	체육시설환경정비	2	2020.01.01.~12.28.	8시간	미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체육시설팀	체육시설환경정비	3	2020.04.01.~11.30.	미실시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미실시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환경정비	7	2020.04.01.~11.30.	미실시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미실시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조경	10	2020.10.19.~10.29.	미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실시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관리	1	2020.01.01.~12.31.	해당 없음	미실시	3시간	3시간	3시간	공무직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관리	2	2020.01.01.~12.31.	해당 없음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청원경찰
노근리사건 70주년TF팀	노근리사건70주년 기념사업 추진	2	2020.01.01.~12.31.	미실시	6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노근리사건 70주년TF팀	노근리사건7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2020.01.01.~08.31.	미실시	6시간	3시간	미실시	해당 없음	
노근리사건 70주년TF팀	노근리사건7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2020.01.02.~05.15.	미실시	6시간	미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노근리사건 70주년TF팀	노근리사건7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2020.02.05.~12.31.	미실시	6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노근리사건 70주년TF팀	노근리사건7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2020.02.03.~12.31.	미실시	6시간	미실시	3시간	3시간	
과사무소팀	노근리평화공원 환경정비	2	2021.05.01.~09.30.	8시간	해당 없음	미도래	미도래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체육시설팀	체육시설환경정비	2	2021.01.01.~11.30.	8시간	미실시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체육시설팀	체육시설환경정비	3	2021.05.13.~12.30.	미실시	해당 없음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환경정비	7	2021.04.26.~11.30.	8시간	해당 없음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관리	1	2021.01.01.~12.31.	해당 없음	3시간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공무직
레저시설팀	송호관광지 관리	2	2021.01.01.~12.31.	해당 없음	미실시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청원경찰

※ 시설사업소 제출 감사자료(p.55 ~ p.56)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¹⁾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사업소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19.07.05.	AB	AC	미보고
	20.01.01.	AC	AD	미보고
	21.03.29.	-	AE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18.07.01.	AF	N	보고
	20.01.01.	N	V	미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8.07.01.	AG	M	보고
	19.01.01.	M	P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5건을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소홀**

【현 황】

○[현황1]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지급일자	적요	집행액 (원)	지급방법 (채주)	지급과목	해소과목
2018. 6.25.	제57회 충청도민체전 출전 선수단(탁구) 격려금 전달	100,000	현금지급 (탁구선수단)	시책추진	기관운영
2019. 4.30.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선수단 격려물품 구입	105,000	카드결제 (충북청과 외 1)	시책추진	-

○[현황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미공개 기간)
2018년	2018. 1월 ~ 12월	-	-
2019년	2019. 1월, 3월 ~ 12월	2019. 2월	1개월
2020년	2020. 1월 ~ 10월	2020. 11월 ~ 12월	2개월
2021년	2021. 1월	2021. 2월 ~ 5월	4개월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²⁾에 규정된 직무

2)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

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적인 용도 또는 월정액으로 집행을 금지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한 바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시책사업과 관련된 경우 당해연도 예산서의 세부사업명 및 부기명으로 표기된 사업(예-군민의 날 체육대회 선수격려)에 대하여 지원계획 등 내부결재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부기명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기관을 빛낼 사람에 대한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성격으로 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경우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함.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제57회 충북도민체전 출전선수단(탁구) 격려금 전달” 외 1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시책추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2018년 6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미공개 건에 대해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금예금계좌[수입금출납원] 관리 소홀

【현 황】

1. 대상계좌

- 계좌번호: 301-****-****-**
- 개설일자: 12.01.04.
- 계좌명의: 영동군 시설사업소(수입금출납원)
- 사용용도: 수입금출납

2. 세입조치 지연 내역

연번	입금일	세입일	금액	내용	비고
1	18.06.25.	18.06.27	331,717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	18.07.24.	18.07.31.	327,747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	18.08.24.	18.08.28.	324,29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4	18.09.19.	18.09.21.	325,924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5	18.11.26.	18.11.28.	295,61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6	18.12.10.	18.12.17.	1,191,960	신재생에너지공급(REC)수입금	
7	18.12.26.	18.12.28.	230,716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8	19.01.28.	19.01.30.	207,14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9	19.02.25.	19.02.27.	242,812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0	19.03.25.	19.03.28.	303,89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1	19.04.05.	19.04.09.	414,000	군민운동장 트랙레일 폐기처리 판매수입	직접고지가능
12	19.04.08.	19.04.15.	1,198,670	신재생에너지공급(REC)수입금	
13	19.04.26.	19.04.30.	328,378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4	19.05.24.	19.05.29.	369,817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5	19.06.26.	19.06.28.	356,752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6	19.07.23.	19.10.21.	2,128,500	신재생에너지공급(REC)수입금	58일 지연
17	19.07.26.	19.07.30.	262,637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8	19.08.26.	19.09.04.	250,366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19	19.11.13.	19.11.27.	1,506,450	신재생에너지공급(REC)수입금	
20	19.11.28.	19.12.04.	234,930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1	19.12.24.	19.12.31.	188,04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2	20.01.28.	20.02.11.	155,724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연번	입금일	세입일	금액	내용	비고
23	20.02.24.	20.03.26.	136,963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2일 지연
24	20.03.25.	20.03.30.	209,034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5	20.04.28.	20.05.11.	323,231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6	20.05.08.	20.05.13.	2,100,120	신재생에너지공급(REC)수입금	
27	20.05.25.	20.05.28.	348,707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8	20.06.25.	20.06.30.	240,526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29	20.07.31.	20.08.05.	257,936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0	20.08.27.	20.09.07.	176,628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1	20.10.26.	20.11.02.	223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2	20.12.28.	20.12.31.	83,365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3	21.01.08.	21.01.27.	2,980,800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직접고지가능
34	21.01.25.	21.01.27.	17,750,470	관급자재 계약 부당이득금 환수	직접고지가능
35	21.01.25.	21.01.29.	114,138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6	21.03.25.	21.03.29.	173,361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7	21.04.26.	21.04.28.	236,658	전력수익금(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	
38	21.03.18.	21.06.02.	274,626,000	송호관광지 캐러밴 재해복구 공제금	직접고지가능

3. 보관금 처리 부적정 내역

입금일	금액	내용	비고
18.10.31.	58,280	과오납 고용보험료 환급	
18.10.31.	54,860	과오납 산재보험료 환급	
18.10.31.	54,790	과오납 실업급여 환급	
18.11.06.	21,000	장기요양환급	
18.11.06.	284,420	건강보험환급	
18.12.05.	10,920	장기요양환급	
18.12.05.	148,250	건강보험환급	
19.01.04.	1,360	장기요양환급	
19.01.04.	18,320	건강보험환급	
19.11.08.	183,890	과오납 산재보험료 환급	
19.11.08.	148,890	과오납 고용보험료 환급	
19.11.08.	227,700	과오납 실업급여 환급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1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며,

-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함.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에서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구분에 따라 정리하며, 규정에 명시된 수납 및 반환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수입금 계좌에 입금된 18. 06. 25. 전력 수익금 외 36건에 대해 1일에서 58일까지 세입조치를 지연하였고, 특히 19. 04. 05. 입금된 군민운동장 트랙레일 폐기처리 판매수익 외 3건에 대해서는 직접 세외수입 부과 후 고지(가상계좌입금)가능함에도 임시계좌에 입금받아 지연처리하였으며, 그 중 21. 03. 18. 입금된 송호관광지 캐러밴 재해복구공제금은 감사 중 확인되어 21. 06. 02.에 세입조치 하였음.
-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18.10.31. 과오납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각종 보관금을 규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좌 입금받아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유류구매]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법인포인트 (원)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6.10.14.	5585-****-****-****	10,821	**6급	V	일반지출	
19.11.20.	5585-****-****-****		**6급	V	일반지출	

1-1. 법인카드 포인트 소멸 현황

발생월	소멸일자	소멸포인트	포인트유형	비고
합계		2,007		
14.06.	19.06.01.	325	법인TOP가맹점포인트	
15.04.	20.04.01.	537	법인TOP가맹점포인트	
15.05.	20.05.01.	241	법인TOP가맹점포인트	
15.06.	20.06.01.	271	법인TOP가맹점포인트	
16.05.	21.05.01.	241	법인TOP가맹점포인트	
16.06.	21.06.01.	392	법인TOP가맹점포인트	

2. 유류카드 포인트 입금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포인트입금		보관책임자		비고
		금액(원)	일자	직	성명	
합계		180,500				
18.09.11.	9430-****-****-****	84,650	19.11.20.	**6급	V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세입 미조치
		57,260	19.11.20.			
		38,590	20.11.2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7]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현황1-1]과 같이 19년부터 21년 까지 포인트 2,007원이 소멸처리 되었고, [현황3]의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된 유류카드 사용 포인트 180,50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계좌에 방치 하였으며, 금번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15.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적립 및 현금전환 현황’에 대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및 유류 포인트 입금액에 대해 즉시 세입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일 준수 소홀

【현 황】

○ 결제일 미준수 현황

결제예정		실제출금		연체료(원)	비고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19.10.28.	1,488,000	19.10.28.	17,796	1,206	
		19.10.31.	102,560		
		19.10.31.	1,368,850		
19.11.12.	5,988,800	19.11.12.	5,873,530	94	
		19.11.15.	115,364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7]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토록 되어 있음.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한 지출처리를 소홀히 하여 결제일 이후에 대금이 출금되어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에서 처리된 연체료를 입금 처리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현 황】

- 대상사업: 2019년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 사업기간: 2019. 12. ~ 2020. 3.
- 총사업비: 144,000천원
- 내 용: 영동읍 계산리 외 14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 설치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위치	설치품목	예산액	납품액	제조사	비고
합 계			144,000	138,008		주문일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금동 마을정자	철봉 외 5종	10,000	9,899	AAA	1.17.
영동읍 회동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회동리(답안) 경로당	공중건기 외 5종	10,000	8,733	BBB	“
영동읍 부용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삼부아파트	오금펴기 외 5종	10,000	9,944	AAA	“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금동 마을공원	노젓기 외 5종	10,000	9,152	AAA	“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월리버빌 아파트 앞 공터	오금펴기 외 5종	10,000	9,333	BBB	“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로얄아파트	노젓기 외 5종	10,000	9,880	BBB	“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미주맨션	자전거타기 외 5종	10,000	9,207	BBB	“
영동읍 탑선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탑선리 마을광장	평행봉 외4종	10,000	10,256	CCC, DDD	“
영동읍 임계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누리광장, 한울광장	상체근육풀기 외 5종	10,000	9,944	AAA	“
황간면 신탄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신탄1리 마을창고 앞	오금펴기 외 5종	10,000	9,998	AAA	“
황간면 안화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화2리 목화실경로당	오금펴기 외 5종	10,000	9,944	AAA	“
추풍령면 관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학동마을	오금펴기 외 5종	10,000	9,944	AAA	“
상촌면 유곡리(소죽) 야외운동기구 설치	소죽 경로당	오금펴기 외 5종	10,000	8,560	BBB	“
상촌면 유곡리(대죽) 야외운동기구 설치	대죽 경로당	허리돌리기 외 5종	10,000	9,784	BBB	“
심천면 초강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문화마을	달리기운동	4,000	3,430	DDD	“

【위법부당사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이라 한다)해야 함.
-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9-27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1억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2단계 경쟁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들을 고시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하였고, 그 결과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금 지급 소홀

【현 황】

○ 지원금 지급 지연 내역

(단위:천원)

내 용	채 권 자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9 생활보조비 (7~9월분)	김○○ 외 27	19.09.20.	8,400	조례제정 후 최초 지급(3개월분)
2019 생활보조비 (10월분)	김○○ 외 27	19.10.21.	2,800	
2019 생활보조비 (11월분)	김○○ 외 27	19.11.21.	2,800	
2019 생활보조비 (12월분)	김○○ 외 27	19.12.20.	2,800	
2020 생활보조비(1월분)	김○○ 외 27	20.01.20.	2,800	
2020 생활보조비(2월분)	김○○ 외 26	20.02.20.	2,700	
2020 생활보조비(3월분)	김○○ 외 22	20.03.19.	2,300	
2020 생활보조비(4월분)	김○○ 외 22	20.04.20.	2,300	
2020 생활보조비(5월분)	김○○ 외 21	20.05.20.	2,200	
2020 생활보조비(6월분)	김○○ 외 21	20.06.17.	2,200	
2021 생활보조비(3월분)	김○○ 외 21	21.03.11.	2,200	
2021 생활보조비(4월분)	김○○ 외 21	21.04.16	2,200	

【위법부당사항】

○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05.01. 제정되었음.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하며,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19. 9월 지급 건 외 11건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지연 및 조기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미승인 건수)
지방재정	126건	123건	97.6%	123건	97.6%	106건	86.2%	3건	5건

【위법부당사항】

- 전 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감사자추출건수)에 대하여 적기처리 하였음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건수가 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미처리건에 대해 즉시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송호관광지 시설사용료 세입조치 소홀

【현 황】

연번	세입조치일	사용료 징수 기간	금액	비고
1	18.06.15.	18.05.29. ~ 18.06.13.	12,444,300	
2	18.07.05.	18.06.14. ~ 18.06.30.	12,442,000	
3	18.07.12.	18.07.01. ~ 18.07.10.	9,741,700	
4	18.07.20.	18.07.11. ~ 18.07.17.	13,630,000	
5	18.08.02.	18.07.18. ~ 18.07.31.	28,403,400	
6	18.08.13.	18.08.01. ~ 18.08.08.	14,167,700	
7	18.08.20.	18.08.09. ~ 18.08.15.	18,804,600	
8	18.09.04.	18.08.16. ~ 18.08.31.	12,848,900	
9	18.09.14.	18.09.01. ~ 18.09.12.	5,605,100	
10	18.10.11.	18.09.13. ~ 18.09.30.	6,739,000	
11	18.10.15.	18.10.01. ~ 18.10.10.	4,025,900	
12	18.10.26.	18.10.11. ~ 18.10.24.	5,079,500	
13	18.11.05.	18.10.25. ~ 18.10.31.	2,840,000	
14	18.11.13.	18.11.01. ~ 18.11.11.	2,349,500	
15	18.11.21.	18.11.12. ~ 18.11.20.	4,140,800	
16	18.12.04.	18.11.21. ~ 18.11.30.	980,000	
17	18.12.28.	18.12.01. ~ 18.12.11.	1,411,000	
18	19.03.19.	19.03.01. ~ 19.03.15.	30,000	
19	19.04.02.	19.03.16. ~ 19.03.31.	1,350,000	
20	19.04.09.	19.04.01. ~ 19.04.07.	1,518,000	
21	19.04.16.	19.04.08. ~ 19.04.14.	1,660,000	
22	19.04.22.	19.04.15. ~ 19.04.21.	2,630,500	
23	19.04.29.	19.04.22. ~ 19.04.28.	3,263,500	
24	19.05.13.	19.04.29. ~ 19.05.12.	3,029,000	
25	19.05.20.	19.05.13. ~ 19.05.19.	7,708,600	
26	19.05.27.	19.05.20. ~ 19.05.26.	3,462,000	
27	19.06.10.	19.05.27. ~ 19.06.09.	4,061,000	
28	19.06.17.	19.06.10. ~ 19.06.16.	5,911,000	
29	19.06.25.	19.06.17. ~ 19.06.24.	3,400,000	

연번	세입조치일	사용료 징수 기간	금액	비고
30	19.07.01.	19.06.25. ~ 19.06.30.	3,959,800	
31	19.07.08.	19.07.01. ~ 19.07.07.	3,869,500	
32	19.07.15.	19.07.08. ~ 19.07.14.	13,509,500	
33	19.07.22.	19.07.15. ~ 19.07.21.	10,173,000	
34	19.07.29.	19.07.22. ~ 19.07.28.	12,506,200	
35	19.08.06.	19.07.29. ~ 19.08.04.	12,195,000	
36	19.08.12.	19.05.05. ~ 19.08.11.	17,129,000	
37	19.08.19.	19.08.12. ~ 19.08.18.	8,649,100	
38	19.09.02.	19.08.19. ~ 19.09.01.	4,549,200	
39	19.09.09.	19.09.02. ~ 19.09.08.	2,468,000	
40	19.09.23.	19.09.09. ~ 19.09.22.	4,484,800	
41	19.09.30.	19.09.23. ~ 19.09.29.	3,650,500	
42	19.10.07.	19.09.30. ~ 19.10.06.	2,391,000	
43	19.10.14.	19.10.07. ~ 19.10.13.	3,432,500	
44	19.10.28.	19.10.14. ~ 19.10.27.	6,560,700	
45	19.11.11.	19.10.28. ~ 19.11.10.	3,579,500	
46	19.12.02.	19.11.11. ~ 19.11.30.	6,023,900	
47	19.12.18.	19.12.04. ~ 19.12.11.	1,775,000	
48	20.08.04.	20.06.01. ~ 20.07.31.	3,530,000	
49	20.10.06.	20.08.01. ~ 20.09.25.	5,103,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관광지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1일을 기준(00:00~24:00)하여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고지서로 영동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설사용료[현장 수납금 이체분, 예약자별 이체 사용료, 카드결제대금 이체분]를 최소 1주일 최대 2개월의 기간을 모아 일괄 세입조치 하는 등 수입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21,99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카누·카약체험장 물품 구입관련 지체상금 과소 부과

【현 황】

○ 과소부과 내역

- 건 명: 카누카약체험장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및 트레일러 구입
- 계약업체: 주식회사 □□□
- 계 약 일: 2019. 04. 11.
- 계약금액: 27,484,000원

납품기한	물품내역	납품일자	검수일자	지체일수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실부과액	적정부과액	차액
2019.06.10.	제트스키 외 4종	2019.08.08.	2019.08.08.	59일 (0.08%)	1,275,250원	1,297,240원	21,99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제90조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1000분의 1.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수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고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법령에 따른 발주기관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설사업소에서 본청 재무과에 의뢰하여 체결한 “2019년 카누·카약체험장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및 트레일러 구매”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업체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 및 검수서류를 접수하는 등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자 “수상 오토바이(제트스키) 및 트레일러 납품 촉구시설사업소-3187호(2016. 6.11.)” 공문 등 독촉공문(3회)과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 실시[시설사업소-4657호(2019. 8.19.)]” 공문을 발송하고 2019. 8. 29.일 업체의 청구에 따라 붙임 [현황]과 같이 납품 기한이 59일 지난 2019. 8. 8.일에 납품을 받아 같은 날 검수하고

선급금(19,238,800원/2019. 5.13.)과 지체상금(1,275,250원)을 뺀 잔금(6,969,950원/2019. 9. 5.)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계약과 달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및 지체사유 등을 확인한 후 지체상금이 정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에도 지체일수를 58일로 잘못 검토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재 산정된 지체상금을 기준으로 적정부과액보다 21,900원을 적게 부과하고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계약금액(27,484,000원) × 지체상금률(0.08%) × 지체일수(59일) = 지체상금(1,297,240원)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과소부과된 지체상금 21,99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협약)이행보증 소홀

【현 황】

○ 민간위탁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계약이행보증 (기간)	배상책임보험 (기간)	수탁기관	비고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17. 1. 1. ~ 18.12.31. (2년간)	17년 : 125,562 18년 : 125,562	미체결	17. 1. 1. ~ 21.12.31. (매년 갱신)	영동군 체육회	계약기간 연장
	19. 1. 1. ~ 21.12.31. (3년간)	19년 : 161,987 20년 : 161,987 21년 : 161,987				최초계약
실내테니스장 운영관리	17. 1. 1. ~ 18.12.31. (2년간)	17년 : 42,303 18년 : 42,303	미체결	17. 1. 1. ~ 21.12.31. (매년 갱신)	영동군 테니스협회	계약기간 연장
	19. 1. 1. ~ 21.12.31. (3년간)	19년 : 45,700 20년 : 44,729 21년 : 45,700				최초계약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계약체결)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영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기자금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집행 시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항에 따라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 또는 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게 계약보증 내용도 변경하여 징구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현황]과 같이 2017. 1. 1. ~ 2021. 12. 31.까지 “영동군 체육회와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및 “영동군 테니스 협회와 실내테니스장 운영관리” 위·수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면서 협약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 민간위탁사업 계약이행보증서 징구 조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최초 계약 시 계약(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연장 계약 시에도 계약(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이행 및 미 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누락된 보증서를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033,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목적 외 사용항목	비고
4건				2,033,000		
노근리 평화공원 LED경관조명설치 전기공사	소 계			514,000		회수
	18.10.22.~ 18.12.18.	-	1,105,000	400,000	공사중 안내표지판(대1 소3)	
				114,000	제경비	
황간 서부 게이트볼장 현대화사업(건축)	소 계			425,000		회수
	19.08.05.~ 19.12.02.	-	7,444,919 (1,194,729)	339,420	공사중 안내표지판(대2 소1), 현장청소 인건비	
				85,580	제경비	
에어파크 산지 사면복구사업	소 계			426,000		회수
	19.10.07.~ 19.12.17.	-	1,392,762	318,762	공사중 안내표지판3	
				108,144	제경비	
노근리사건 현장주변 재정비공사	소 계			668,000		회수
	20.04.17.~ 20.06.23.	-	2,309,689	498,779	교통정리 신호수, 안전장구 구입 부가세포함	
				169,221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 산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노근리평화공원 LED경관조명설치 전기공사>외 3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에 사용명목 중 ‘공사안내 입간판’, ‘교통정리 신호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였고, 환경보전비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현장청소 인건비’를 정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 청구한 총금액 2,033,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과오지급된 공사비 2,033,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42,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착공내역서 계상액	회수금액	감액동의서 검토 및 정산 부적정	비고
2건				1,142,000		
송호관광지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소 계			973,000		회수
	18.06.28.~ 18.07.05.	-	732,190	732,190	미사용 간접공사비 감액	
				240,810	제경비	
송호관광지 수영장 보완공사	소 계			169,000		회수
	20.04.16.~ 20.06.04.	-	1,489,871	126,234	세금계산서 공급가 차액	
				42,766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 6. 28. ****과 계약하여 완료한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풀장 도색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간접공사비 사용 증빙자료나 감액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하여 973,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 2020. 4. 9. **건설(주)와 계약하여 완료한 <송호관광지 수영장 보완공사> 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을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169,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과오지급된 공사비 1,142,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